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
		배포일시	2020. 8. 25(화) / 총 1매(본문1)
담당 부서	주택정비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재평, 서기관 김종성, 주무관 박창준 • ☎ (044) 201-3384, 3390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정부는 재건축 사업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제도를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(중앙일보, '20.8.25) >

> ◈ 정부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제(6.19대책)로 인해 재건축 사업 도중에 다주택자에게 집을 사면 입주권을 받을 수 없음

□ 동일 재건축 단지에서 여러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으로부터 1채를 양도받은 매수인은 **조합원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.**

○ 이는 조합원 1인이 다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**소유 부동산을 분리·양도**함으로써 **시세차익**을 얻고, **분양권**을 증가시키는 등 투기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**2009년 도입**하여 **일관되게 운영**하고 있습니다.

□ 아울러, 현 정부에서 재건축아파트의 투기방지를 위해 시행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의 **주택공급 수 제한***, **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강화****는 기사에서 언급한 조합원이 보유한 여러 채의 아파트 중 1채를 매수한 경우 매수인의 **조합원 분양권 취득 불허와는 무관**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
* ('17.6.19 대책)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 원칙적 1주택만 분양 허용하며, 기존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 60㎡이하 주택 1채 추가 허용

** ('17.8.2 대책)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금지되는 제도(2003년 도입)의 예외 사유를 강화(사업시행 인가 후 2년 내 미착공→3년 내 미착공)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김종성 서기관(☎ 044-201-338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